

가정통신문

군산중앙여고 제2022 - 47호 담당부서 : 교육연구부

교 무 실 : 063.465.1602

〈〈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1·2·3학년) 안내 〉〉

- **1. 고사 일시**: 2022. 7. 1.(금) ~ 2022. 7. 5.(화) 8:50~12:20
- 2. 정기고사 중 출결과 인정점 인정 비율
 - 가. 하루 단위로 인정 (무단. 부정행위 제외)
 - 나. 고사 기간 중 증빙서류는 필수
 - 증빙서류에는 결시 일자와 사유(병명 또는 증상)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출결과는 별도로 성적처리는 해당 인정점 인정 비율이 미적용 됨
 - 다. 출결과 인정점 인정 비율 (증빙서류 제출 시)

• 공결 : 인정 결석(출석) / 인정기준점수 100%	• 질병 : 질병 결석(결석) / 인정기준점수 80%
• 생리 : 인정 결석(출석) / 인정기준점수 80%	• 기타 : 기타 결석(결석) / 인정기준점수 80%
• 무단 : 미인정 결석(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부정행위 : 출석 / 0점 처리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자 및 백신 접종자 : 뒷면 참조
- 3. 정기고사는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유로 정기고사에 결시하는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성적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 ※ 정기고사 기간과 정기고사 전·후 1주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방침(성적처리 및 확인, 재시험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으로 출결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 성적은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에 준하여 처리함)
 - ※ 정기고사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4. 성적 확인·정정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7. 7.(목) ~ 2022. 7. 8.(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학사일정(2학년 현장체험학습) 관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변경함
 - ※ 성적 확인·정정 및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정정·이의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5. 인정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4조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 정점수를 부여한다.
 -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이 나이드를 고려하여 하새들이 과모병 평고 저스를 기즈으로 이저져 사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치조이저저 — 기즈저스 v	결시고사 평균 기준고사 평균 × 인정점 부여비율
의 중 한 성점 - 기 단점 다 시	기준고사 평균 시 전 점 구 역 비 필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되즈 이저저	
<u> </u>	평균	기준점수	평균	최종 인상점
수학	68.0	65	62.3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65 = 62.3: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자 및 백신접종자 성적처리

※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자 성적처리 (하루 단위로 적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제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스캔본 등)	인정점 인정비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100%
의심 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100%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100%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100%

-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필수임.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 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 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 ⇒ 문자 통보된 입원·격리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은 미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함.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성적처리 (하루 단위로 적용)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	l(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평가의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고사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고사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증빙자료 확인 후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100% 인정비율 적용)을 부여함.
- ※ 고사 기간 중 **증빙자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가 **없는 경우**, 성적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80% 인정비율 적용)을 **부여**함. (단,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제출)

2022. 6. 24.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